

[별표1]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

□ 일반직 4급(복수직) 이하(연구사·지도사 포함)

공통	예외		비고
	방호·운전·조리직렬	관리운영직렬	
80시간	20시간	30시간	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%는 '부처지정학습'으로 이수해야 함

1. 이러닝 이수시간은 전체 기준시간의 80%이상을 초과하지 못 함. 다만, 관리운영직렬 및 방호·운전·조리 직렬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·재해 발생으로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집합교육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(고지방법은 문서시행 원칙)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(1.1.부터 12.31.까지) 이러닝 이수시간을 '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'까지 인정함

□ 시간선택제 공무원

$$\text{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교육훈련 기준시간} = \text{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(40h)}}$$

<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>

적용 대상		교육훈련(상시학습) 기준시간	
		전일제	시간선택제
공통		80시간	40시간
예외	사무운영 직렬	32시간	16시간
	운전·방호·위생 직렬	10시간	5시간